

2025년 로봇 재자원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모집안내

첨단로봇 재자원화 산업의 미래 핵심 기술 분야 신산업 창출 및 국내 기업 기술력 확보 등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지원을 위해 선행기술 개발지원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3월 28일
한국로봇사용자협회
고등기술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 목차 >

I. 기업 지원 개요

1. 목 적
2. 유 형
3. 공모 방식
4. 지원 내용
5. 지원 기간 및 지원 규모

II.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1. 신청 기간 및 방법
2. 신청 자격
3. 사전 지원 제외 대상
4. 추진 일정

III. 평가 기준

1. 평가 방법
2. 평가 기준

IV. 유의 사항

1. 지원 제외 처리 기준

V. 문의처

VI. 관련 법령

[참고1] 제출 서류

[참고2] 사전 지원 제외 기준 (신청 자격 검토)

1. 목 적

- 재제조 로봇을 활용한 제조공정 실증과 재자원화 기법(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고가자원 재순환 및 기업 부담 완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로봇 보급확산, 리퍼브 로봇 인식 개선, 제조공정 리퍼브 로봇 상용화로 로봇 활용 제조공정 스마트화를 통한 관계기관과 기업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유 형 : 선행기술 개발지원 및 기술 자문

- * 선행기술 개발지원 : 리퍼브 로봇의 활용으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중소/영세 제조기업
- * 기술 자문 : 기존 생산 공정의 개선이 필요한 중소/영세 제조기업

3. 공모 방식 : 자유 공모

4. 지원 내용

- [선행기술 개발] 리퍼브 로봇 활용 제조공정 개발, 리퍼브 기법 개발 비용 지원
- [기술 자문] 리퍼브 기법(기술) 개발 및 응용, 리퍼브 부품 소재 기술, 리퍼브 활용 의료제조서비스 기기, 리퍼브 활용 기계제조서비스에 관한 기술 자문
- 본 사업을 통해 旣지원 받은 기업의 경우 기존과 다른 공정 개발로 지원할 시에만 접수가 가능, 본 사업을 통해 이미 2회 지원받은 기업은 추가 지원 불가

< 한국로봇리퍼브센터 기술지원사업 지원 내용 >

구 분	지원 내용	
기술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퍼브 기법(기술) 개발 및 응용에 관한 기술자문(컨설팅) 지원 • 리퍼브 부품 소재 기술에 관한 기술자문(컨설팅) 지원 • 리퍼브 활용 의료제조서비스에 관한 기술자문(컨설팅) 지원 • 리퍼브 활용 기계제조서비스에 관한 기술자문(컨설팅) 지원 	
선행기술 개발지원	실제 공정 구현 및 생산성 증대 효과 도출이 가능한 실증 형태의 선행형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비 연계형 리퍼브 기술 고도화 리퍼브용 3rd-party 핵심부품개발 리퍼브 로봇 실증을 통한 양산검증
	중고 로봇 활용 재자원화 기법(기술)개발을 통한 리퍼브 기술 기업 지원체계 수립에 관한 지원	리퍼브 기법(기술) 개발

5. 지원 기간 및 지원 규모

구 분	지원 기간(개발기간)		지원 금액	지원기관	비 고
기술자문	3월 ~ 10월(3개월 이내)		최대 3,000천원	한국로봇사용자협회 고등기술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전문위원 지원금
선행기술 개발지원	1차	5월 ~ 9월(5개월 이내)	최대 30,000천원	한국로봇사용자협회 고등기술연구원	기업 부담금 10% 별도
	2차	6월 ~ 10월(5개월 이내)	최대 30,000천원		

II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1.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1차)'25.4.11.(금) ~ '25.4.24.(목) 18:00까지
(2차)'25.5.9.(금) ~ '25.5.22.(목) 18:00까지

* 접수 마감일(1차: '25.4.24., 2차: '25.5.22.)까지 제출 완료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하며, 접수 마감일 당일에 전산 폭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제출 완료 요망

- (신청 방법) www.krc.or.kr 접속 > Re:SHOP > 지원서비스 > 사업계획
- (제출 서류) 한국로봇리퍼브센터 홈페이지(www.krc.or.kr) 참조

2. 신청 자격

- 로봇 재제조 기술(기법) 개발을 통한 사업영역 확장 및 사업고도화 기업
- 로봇 활용 제조기업 중, 중소기업/영세기업 및 소상공인 전체
 -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 '소상공인'이란 종업원의 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 * '영세기업'이란 경영 규모가 매우 작은 기업으로, 주로 종업원의 수가 5인 미만인 기업

3. 사전 지원 제외 대상

- 사전검토 결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 지침」제17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선정평가를 위한 사전검토 단계에서 신청 자격, 중복 과제 여부, 참여제한 여부 등에 대한 검토 결과, 결격 사유가 있어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

4. 추진 일정

추진 절차	기관	일정
사업공고	한국로봇리퍼브센터	(1차) 4.11.~4.24. (2차) 5.9.~5.22.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검토	한국로봇리퍼브센터 ↔ 수행기관	(1차) 4.11.~4.25. (2차) 5.9.~5.23.
발표 평가	한국로봇리퍼브센터 ↔ 평가위원회	(1차) 4월 중 (2차) 5월 중
협약	한국로봇리퍼브센터 ↔ 수행기관	(1차) 4월 말 (2차) 5월 말
사업 수행	수행기관	(1차) 5월~9월 (2차) 6월~10월
최종 평가/사업비 집행점검	한국로봇리퍼브센터 ↔ 평가위원회	11월
사업 종료		11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Ⅲ

평가 기준

1. 평가 방법

- 접수된 과제에 제출 서류, 신청 자격 등 형식 요건에 대한 사전 검토 후, 발표 평가 실시
 - * 발표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으로, 연구책임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함
- 평가 결과,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신청 기업은 '선행 기술개발 지원 가능'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신청 기업은 '선행 기술개발 지원 보류'로 분류함

2. 평가 기준

평가 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사업목표 (20)	목표구체성	목표 설정의 구체성	10
	목표 실현 가능성	추진전략 및 체계, 일정 등의 적정성	10
지원의 타당성 (30)	과제 내용의 적절성 및 정부 지원 필요성	수행기관의 사업이해도 사업목적과 과제 내용의 부합성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및 과제 추진의 시급 적절성	15
	기업의 리퍼브 로봇 활용 제조공정 스마트화 필요성	대상 제품의 차별화 요소, 유사 공정 대비 우수성 리퍼브 로봇 활용 공정 지원을 통한 발전 가능성 및 공공성	15
전략의 적합성 (20)	리퍼브 로봇 활용 제조공정 개발 전략의 적절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리퍼브 로봇 활용 전략, 위험 극복 방법 리퍼브 로봇 활용에 관한 생산성 확대 및 지속가능 경영 기능성	10
	기술개발 전략의 적절성	기술개발 적합성, 기능성 등 종합 검토	10
기대효과 (30)	사업화 전략 및 기대효과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사업화 전략 달성에 예상되는 효과	10
	사업을 통한 파급효과	기술 발전 기여, 개발기간 단축, 비용 절감 등 기술·경제·산업적 측면의 효과 관련 업계의 리퍼브 로봇 인식 재고 등 사회적 측면 효과	10
	일자리 창출 효과	기술 자문 및 선행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 내,외부 일자리 창출효과	10
합 계			100

※ 세부 평가지표 및 배점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유의 사항

1. 지원 제외 처리 기준

- 필수 입력 사항을 미기재 혹은 허위 작성 시, 지원 제외 처리 가능

- 과제 내용 및 사업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 번호를 통해 진행 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마감 일에 임박하여서는 유선 문의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 필요시 추가 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 수행기관은 성실히 이행해야 함

V	문의처
----------	------------

구 분	담당 부서	연락처
사업 내용 및 지원 관련 문의	한국로봇리퍼브센터	☎ 055-328-1800 skylee@korua.or.kr kyein1234@korua.or.kr
서류접수 및 로봇리퍼브플랫폼 관련 문의		

VI	관련 법령
-----------	--------------

관련 법(법령)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내용상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우선 적용함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및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함

참고 1**제출 서류**

제출서류	필수 여부	
	기술 자문	선행기술 개발지원
[서식 1] 기업지원 신청서	○	○
[서식 1-1] 기술 자문 신청서	○	-
[서식 2] 기업 지원 사업 협약서	-	-
붙임1. 기업 지원 사업 협약 변경 승인 요청서	-	-
[서식 3] 기술 자문 계획서	○	-
[서식 3-1] 기술 자문 일지	○	-
[서식 3-2] 기술 자문 결과 보고서	○	-
[서식 3-3] 자문위원 수당 지급신청서	○	-
[서식 4] 연구개발계획서(일반형)	-	○
[서식 4-1] 기업지원 최종결과보고서	-	-
[서식 5] 수혜기업 대표의 참여 의사 확인서	○	○
[서식 6]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
[서식 7]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 서약서	○	○
[서식 8]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중소기업 확인서	○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	○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minfo.mss.go.kr>

참고 2

사전 지원 제외 기준 (신청 자격 검토)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 사전 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 기준

구분	내용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할 수 있다. - 지정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 -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 자유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既往발·既往지원 연구개발 과제와의 차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다. -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비공개 과제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를 실시한다.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그 차별성 여부를 판단한다. - 이미 지원되었던 연구개발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참여 제한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채무 불이행 및 부실위험 검토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한다. 	
	구분	사후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 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p>※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p>	<p>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근 회계연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회계연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구분	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36 250 405 309">구분</th> <th data-bbox="405 250 979 309">사전지원제외</th> <th data-bbox="979 250 1415 309">사후관리</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36 309 405 904"></td> <td data-bbox="405 309 979 904"> <p>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p> <p>※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p> <p>※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p> <p>※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p> <p>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p> <p>※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p> <p>※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p> <p>※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p> <p>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p> </td> <td data-bbox="979 309 1415 904"></td> </tr> <tr> <td data-bbox="336 904 405 1173">조치</td> <td data-bbox="405 904 979 11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td> <td data-bbox="979 904 1415 11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평가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연구개발기관이 "사후관리대상"일 경우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 등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도점검 등 결과 "연구개발비 부정 집행 또는 기업 부실"이 의심되는 경우 특별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된 기관이 연차별 연구개발비 지급 시점에 사후관리 대상조건 1개 이하인 경우 사후관리대상 해제 </td> </tr> </tbody> </table>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p>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p> <p>※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p> <p>※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p> <p>※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p> <p>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p> <p>※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p> <p>※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p> <p>※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p> <p>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p>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평가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연구개발기관이 "사후관리대상"일 경우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 등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도점검 등 결과 "연구개발비 부정 집행 또는 기업 부실"이 의심되는 경우 특별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된 기관이 연차별 연구개발비 지급 시점에 사후관리 대상조건 1개 이하인 경우 사후관리대상 해제 	<p>-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p>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p>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p> <p>※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p> <p>※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p> <p>※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p> <p>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p> <p>※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p> <p>※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p> <p>※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p> <p>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p>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평가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연구개발기관이 "사후관리대상"일 경우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 등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도점검 등 결과 "연구개발비 부정 집행 또는 기업 부실"이 의심되는 경우 특별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된 기관이 연차별 연구개발비 지급 시점에 사후관리 대상조건 1개 이하인 경우 사후관리대상 해제 									
의무사항 불이행	<p>-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p>										